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	----

발의연월일 : 2006년 12월 22일
발 의 자 : 민경환의원외 20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조대상, 보조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보조금의 예산요구(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
-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매년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음.(안 제9조)
-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안 제24조)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7조(보조금의 예산요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사업내역 및 금액을 검토 조정하여 정책관리실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은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산출한 산식에 따라 별표와 같다.

제10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부담)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 시·군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다)

제13조(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제출되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보조사업자(법인·단체 및 개인에 한한다)의 신용도 및 자부담능력 등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수시·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

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자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2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1.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산식에 의거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단,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적용 비율은 50:50으로 한다)

차등보조율 적용산식

$$\frac{\text{해당 시·군 재정자립도}}{\text{시·군 재정자립도 평균}} + \frac{\text{해당 시·군 재정자주도}}{\text{시·군 재정자주도 평균}} \times \frac{1}{2}$$

주1)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산식

$$-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보통교부세}}{\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주2)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산식에 필요한 지수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연도의 예산상 지수를 사용하되, 당해연도 당초 예산상의 지수를 전년도는 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평균한 수치를 사용한다.

2. 차등보조율

가. 인상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10%, 5%)을 가산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거 지원(보조)한다.

(적용보조율 = 기준보조율 + 차등보조 적용 비율)

나. 인하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10%, 5%)을 각각

차감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거 지원(보조)한다.

(적용보조율 = 기준보조율 - 차등보조 적용비율)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및 교부 결정액

○ 보조사업자 :

○ 교부 결정액 :

3. 보조사업 내용 :

4. 예산 과목 :

5. 보조 조건

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관련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 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